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의안번호	51
------	----

제출년월일 : 2003. 0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 안 이 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 1. 1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기본방향을 규정함
- 나. 군기본계획(공청회방법 및 자문)에 관하여 규정함
- 다. 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사항등에 관하여 규정함
- 라. 개발행위허가(경미한사항,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건부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회 자문등)에 관하여 규정함
- 마.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을 규정함
- 바.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 사. 군계획상임기획단에 관하여 규정함
- 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

3.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2003. 4. 25 ~ 5. 16
- 마. 제출의견 : 제출의견없음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 2 장 군기본계획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군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군관리계획

제 1 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 이내

3. 획지면적의 10분의 3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2이내의 변경
5. 영 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 제52조제1항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10.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11.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12.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13.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14.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15.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제 2 절 군계획시설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평창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①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 3 절 지구단위계획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조건부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정·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 립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 등급(비오름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II등급(비오름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

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

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해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트럭운반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

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의 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예치기간) ①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③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4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①휴게음식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나목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일반음식점, 나목 및 타목의 안마시술소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 ②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제1항의 '건축물은 규칙 제12조 별표에서 규정한 지역이외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와 같다.

제35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탁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

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타미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타미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갇셈·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관계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계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블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 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 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근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근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

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lpha)/(1-\alpha)] \times (\text{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

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군계획위원회

제 1 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군 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3조(위원장 등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수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제70조(수당 및 여비)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1조(설치 및 기능)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

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7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평창군도시계획조례(조례 제1696호), 평창군준도시
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및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
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
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
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평창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및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
우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

터 미만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배 이하 또는 대지 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육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

중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배 이하 또는 대지 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별표 3 제2호아목의 공장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배 이하 또는 대지 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별표 3 제2호 아목의 공장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가 9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가 9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을 제외한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시설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
당하는 것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
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
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농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

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가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
 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안마시술소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우리군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
 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
 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

지하는 것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별표 18- 제2호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 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도·지방도·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공원·자연공원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
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

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
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
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
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8 제2
호사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제13조제1항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
목과 바목·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
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일반목욕장·안마시술소 및 숙박시설은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우리군 조례가 정하는 지
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
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적 내지
다목적에 해당하는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별표 19 제2호사목 및 별표 20 제2호차목의 공장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12조 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하천법에 의한 지방2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제외지 상단법선 기준, 자연제방을 포함한다)로부터 30m 이내인 지역. 다만, 하천과 휴게음식점등의 사이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수도시설의 상수원 취수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수 구역

다. 지하수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라. 먹는물관리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샘물제한구역

마.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

바. 지방지정문화재·기타 문화유산으로 판단되는 자원의 주변으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관계법령발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7조(용도지역의 관리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이상 쌓아 놓는 행위